

##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

**제1조 (보증책임)** 건설공체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은 계약자(이하 “채무자”라 한다)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, 회생절차개시결정, 종합공사 시공건설업의 전부 등록말소, 사업자의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사유로 인하여 앞면 기재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(이하 “보증사고”라 한다) 그 상대방(이하 “보증채권자”라 한다)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.

**제2조 (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)**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
1. 천재지변, 전쟁,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2.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3. 보증서를 보증목적(주계약내용)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
4.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무자격자 등 당해 공종에 대하여 시공자격이 없는 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인 때
5. 제7조제3항 또는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

**제3조 (보증채무의 이행한도)**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8조의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.

1. 보증채권자(하수급인)가 “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”에 의해 원도급의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금 액
2.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 공사대금의 할인료 등의 이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자금액
3. 보증사고 발생후 보증채권자의 계속시공으로 생긴 공사금액
4. 채무자의 기성인정 여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 반입한 자재중 시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자재에 해당하는 금액

**제4조 (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)**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,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의성실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.

-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**제5조 (주계약의 해지)** 보증채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합니다.

**제6조 (보증서의 효력상실)**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,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. 다만,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**제7조 (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)** 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
1. 주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금 또는 하도급기성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일부터 15일이내에 그 사실
  2.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사고일부터 15일이내에 그 사실
  3. 선금 또는 기성금수령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합으로부터 통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수령여부, 기성내역 및 대금수령내용(어음인 경우 어음사본 첨부)의 사실
  4.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(어음의 경우 만기일)이 보증기간 이후이거나, 당초 대금지급기일(어음의 경우 만기일)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
- ②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금청구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1. 보증서 또는 그 사본
  2. 보증사고의 사유 및 원도급의 발주자(자체사업의 경우 감리자)가 확인한 기성내역서 등 보증금 청구금액에 관한 정당한 입증서류
  3. 기타 보증사고 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
- ③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와 제2항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**제8조 (보증사고 발생시 기성인정 기준)** 제3조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금액은 원도급의 발주자(자체사업의 경우 감리자)가 채무자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행한 타결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.

**제9조 (보증채무의 확인조사)** ① 조합은 제7조제1항의 통지나 보증금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공사내역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**제10조 (보증금 지급시기)**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정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,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

**제11조 (대위 및 구상)**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,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.

-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 또한 조합은 보증금 지급전이라도 위의 서류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협조 또는 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조합이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.

**제12조 (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)**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배한 경우 조합은 보증책임이 없습니다.

**제13조 (관할법원 및 준거법)**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의 영업점 또는 조합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,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.